

벤처기업 대표이사 소유주식 직원에게 양도 시 유의사항

과세당국은 얼마 전 부품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소유 주식 중 일부를 직원에게 거래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2002년에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매를 하고, 세금까지 자불했다. 정당한 거래로 여긴 이들은 거래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후 동사는 2004년에는 코스닥에 등록하여 현재 시가총액이 수천억대에 이른다.

국세청이 이들의 거래를 증여로 해석한 주된 이유는 대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식이 3년 내 상장됨에 따라 많은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 41조의3항을 적용한 것이다.

위 벤처기업의 사례가 상증법 제41조의3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박승찬 회계사는 “해당 임원들이 최대

주주 등과 친족 등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임원들은 최대주주 등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상기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면서도 “과세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을 벤처기업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유능한 직원 확보 등을 위한 대주주의 주식거래가 불가능해져 벤처창업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된다. 벤처업계도 이번 과세로 인하여 벤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도 “업계차원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거나 협회의 노력이 빙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요구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기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기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기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3.12.30>